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연월일: 2009. 8.17. 의안 518 번호

제 출 자:대전광역시장

1. 폐지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 하는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법률구조법」, 「법제업무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2) 입법예고 : 2009. 7. 17. ~ 8. 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법률구조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 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법제업무운영규정

- 제26조 (법령해석의 요청)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그 밖의 모든 행정관계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령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 본문에 따라 사실상 의견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연장할 수 있다)에 법령해석기관으로 요청에 따른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법 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⑦민원인은 법제처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법령에 대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 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⑧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민원인의 법령질의 사항을 포함한다)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2.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경우
- 4.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기관에 대한 해석요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전광역시 법제사무처리규정

제18조(회시요령) ①담당관·과장은 민원인, 소속기관 및 자치구에서 질의한 자치법규 해석에 대한 회시를 하는 경우 확실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하여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회시하여야 한다.

②자치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배경과 취지 및 운영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신중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